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조정 실태분석

김대범¹, 이종은^{2*}

¹금융감독원 팀장, ²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BIS Capital Adequacy Ratio Management by Mutual Savings Banks

Daebeom Kim¹, Jong Eun Lee^{2*}

¹Head of Team,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²Associat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Business School

요 약 본 연구는 2011년 6월말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되는 104개의 상호저축은행을 표본으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2011년 전·후의 BIS자기자본비율 비교를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인위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조정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왔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호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을 위해 주로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은 특히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 중인 상호저축은행에서 좀 더 유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예상과는 달리 Non-Big 4 감사인 뿐만 아니라 Big 4 감사인도 상호저축은행의 인위적인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을 효과적으로 감시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 상호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 대형회계법인, 감사품질

Abstract Using the sample of 104 mutual savings banks inspec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on June 2011, this study examines if mutual savings banks manage BIS capital adequacy ratio using allowance for bad debts through comparison of BIS capital adequacy ratio before and after the 2011 when mutual savings banks experienced a large-scale restructuring by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We find that mutual savings banks mainly use the allowance for bad debts to manage BIS capital adequacy ratio. It also shows that mutual savings banks with a business suspension order by FSS manage BIS capital adequacy ratio more than the others. Lastly, we find that Non Big4 auditors as well as Big 4 auditors don't effectively audit the use of the allowance for bad debts for mutual savings banks to manage their BIS capital adequacy ratio.

Key Words : Mutual Savings Banks, BIS capital adequacy ratio, allowance for bad debts, Big 4 auditor, audit quality

1. 서론

“올해는 상호저축은행들에게 무시무시한 한 해였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대전·부산2·전주·중앙부산·보해·도민 등 상반기에만 8개의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렸다.

*본 논문은 김대범의 석사학위 논문(2013년)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Jong Eun Lee(jelee2012@skku.edu)

Received March 13, 2019

Revised April 23, 2019

Accepted June 20, 2019

Published June 28, 2019

..... 중략 지난 8월 경은저축은행, 9월에는 제일·제일2·프라임·대영·에이스·파랑새·토마토 등 하반기에도 8개의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 됐다. 올해 영업정지 된 총 16개 저축은행 중 일부는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대신증권 등에 인수돼 새로운 사명으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조선일보 2011.12.19, [경제 10대뉴스]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는 일간지 경제기사 중 일부의 내용이다.

이처럼 상호저축은행 부실화는 2011년 한해 우리 경제의 핫 이슈중의 하나였다. 1972년 신용금고법 제정으로 시작된 상호신용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는 후, 2002년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더군다나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서민금융시장의 급격한 위축 및 서민층의 금융수요 증가에 따른 사금융피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도 서민금융 활성화를 적극 추진¹⁾하여 오는 등 상호저축은행은 제1금융권에 이어 명실상부 제2금융권의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²⁾ 이후 국내 금융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까지 동반 하락하는 등의 여파로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³⁾의 부실이 증가하면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은 예견된 상황이었는지도 모른다. 결국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 PF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금융권의 부실 PF대출에 대해 분리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부동산 PF로 인한 금융권의 부실화를 조기에 차단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상호저축은

행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2011년 초부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상호저축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⁴⁾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건전성지표라 할 수 있는 BIS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8% 보다는 낮은 5%를 최저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2010년 12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평균 9%대 이상의 높은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은행수준 만큼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판단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감독 강화 방침에 따른 대대적인 경영진단 이후에 나온 2011년 6월말 결산일 현재 BIS자기자본비율은 상호저축은행 평균 5.67%⁵⁾로 적기시정조치⁶⁾의 대상이 되는 최저요구 비율인 5%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그 동안 상호저축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을 상향 유지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행하여 왔음을 의심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제1금융권과 달리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에 있어서 안정성은 기관의 운명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은행에 비해 영업기반 및 자산규모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인 상태에서 예금에 대한 안정성 보장 없이 은행보다 1%~2% 정도의 높은 예금금리 만으로는 은행과 경쟁하며 예금자를 유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은 수익성보다도 예금의 안정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었고 비록 최저 BIS자기자본비율이 5%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같은 수준인 8% 이상을 유지해왔던 것도 은행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예금자 및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이 가능한 한 높은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유인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이번 2011년 상호저축은행 사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1) 2007년 10월 금융감독당국은 “상호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20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저신용 서민층의 금융수요 증가에 따른 사금융 피해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적 서민금융회사인 상호저축은행이 서민층의 금융수요를 흡수할 필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

2)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에 기인한다.

3) PF란 사업, 또는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상호저축은행의 PF는 주로 부동산 PF에 대한 대출로써 사업승인 이전이나, 분양이전 등 본 사업 진행 이전에 이루어지며, 본 사업 진행 이후에는 제1금융권의 PF대출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부실화 위험이 높음

4) 2011년 3월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7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경영실태 점검 등을 진행

5)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중인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도민, 대전, 전주, 보해 등 7개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98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산정한 수치임

6)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BIS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BIS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의 증액 및 신규업무 진출 제한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2011년 상호저축은행 사태 이전에 BIS자기자본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회계정보를 조정하여 왔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중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조정이 주요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은 특히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 중인 상호저축은행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품질과 관련하여 예상과는 달리 Non-Big 4 감사인 뿐만 아니라 Big 4 감사인도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실제 회계자료를 활용한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에 대한 실증분석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이익조정관련 연구에서 많이 시도되었던 발생액(특히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을 통한 방법이 아닌 실제 회계수치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2011년 금융감독당국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실태 점검을 기준으로 2010년 6월말과 2011년 6월말의 BIS자기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 및 당기순이익 등 실제 회계자료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상호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인 최근 이슈라는 점이다. 2011년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실태점검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상호저축은행이 퇴출되기도 하는 등 작년 우리 경제의 큰 화두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 및 BIS자기자본비율 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표본선정 및 연구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2.1 상호저축은행의 변혁과 현황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이용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오던 영세상공인 및 서민가계가 주로 의존해오던 사금융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1972년 8월 제정⁷⁾된 상

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서민전문금융기관으로 설립 초기에는 상호신용금고로 불리었으나, 2002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하면서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다.

상호저축은행은 설립목적에 맞추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지역금융기관으로 지역금융, 서민금융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총대출금의 50%이상을 해당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수신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은 정기예금, 보통예금 및 수입부금 등의 수신상품과 이를 기반으로 일반자금대출, 어음할인 등 비교적 단순 업무를 취급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은 1997년 외환위기 및 2003년 카드사태 등 가계신용위기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부실화되어 1997년 말 231개에 달하던 상호저축은행 수는 2011년 6월말 현재 105개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었다.

2003년 카드사태로 인한 가계신용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서민신용대출 기피 등으로 서민금융시장의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사금융이용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고, 동시에 2004년 이후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부동산 관련 여신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은행과 동일한 예금보장한도(5천만 원⁸⁾) 및 상대적 고금리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6월말 38.8조 원이던 총자산은 2010년 6월말 86.3조 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그러나 20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서민신용대출 기피,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부동산 PF 등 부동산분야 대출 쏠림현상 지속으로 2009년 말에는 부동산 관련 여신비중이 49.9%에 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경제는 위축되기 시작했고, 그동안 호황을 누리던 부동산 시장마저 불황에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상호

7) 당시 단기금융업법(1975년 12월 중금법에 흡수), 신탁법도 같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사금융 양성화 3법이라 함

8) 상호저축은행은 IMF 직후 예금자보호법 개정(1997.12.31)에 따라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에 포함되었으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6항) 개정(2000.10.31)으로 2천만 원 한도인 예금보장한도가 2001년 1월부터 5천만 원 한도로 상향됨

Table 1. Yearly Distribution of Mutual Savings Banks

(Unit: Billion W)

	Number of Banks & Branches		Financial Condition		Description
	Banks	Branches	Total Assets	Net Income	
2001. 6	125	241	21,111.3	Δ508.2	
2002. 6	117	229	24,156.8	122.7	
2003. 6	115	231	26,978.7	129.8	Crisis of household credit
2004. 6	114	245	32,786.9	19.4	
2005. 6	112	250	38,326.3	Δ349.4	
2006. 6	110	264	46,412.7	537.2	
2007. 6	109	290	53,165.8	627.1	
2008. 6	107	325	63,528.7	336.7	Financial crisis
2009. 6	106	344	74,894.2	Δ56.6	
2010. 6	105	371	86,388.5	Δ766.8	Crisis in Europe
2011. 6	105	366	77,255.7	Δ5,474.9	

Data source: <http://fisis.fss.or.kr>Table 2. Yearly Distribution of BIS Ratio⁹⁾

(Unit: %, Billion W)

	2011.6	2010.6	2009.6	2008.6	2007.6
BIS Ratio	5.67 ^{*)}	9.04	9.43	9.08	9.09
Owners' Equity	3,662	7,380	6,735	5,404	4,543
Risk-weighted Assets	62,460	81,587	71,439	59,488	49,995

Data source: <http://fisis.fss.or.kr>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뇌관과도 같았다.

이에 금융감독당국과 상호저축은행은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친 부실 부동산 PF의 분리 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하였지만, 2010년 유럽발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2011년 12월 현재 16개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고, 이중 6개 상호저축은행(삼화, 대전, 전주, 보혜, 경은, 부산상호저축은행)이 다른 기관으로 계약이전 되었다.

그리고 2012년 6월말 현재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은 93개사로 이중 BIS자기자본비율 5% 이하 상호저축은행은 13개사이며 이중 10개사(경기, 골든브릿지, 대원, 삼일, 세종, 신라, 우리, 진흥, 토마토2, 더블유상호저축은행)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이들 13개사 중 6개사는 예보가 관리하고 있고, 3개사는 결산일 이후 증자로 5%를 초과하였으며, 4개사는 현재 증자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금융감독원 보도참고

9)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중인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도민, 대전, 전주, 보혜 등 7개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수치임(포함할 경우 1.55%)

자료, 2012.10.2, '저축은행 2011년 회계연도 경영공시 관련') 이 과정에서 2011년 6월말 현재 7개사이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2011년 하반기에 제일저축은행, 2012년 상반기에 한국, 솔로몬저축은행, 2012년 10월에 서울, 진흥저축은행이 상장폐지 되었고, 현재 신민, 푸른저축은행 두 곳만이 상장을 유지하고 있어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추가적인 퇴출이 없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수단¹⁰⁾으로 사용하고 있는 BIS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본건전성 측정지표로 1988년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¹¹⁾에서 은행의 자본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만든 국제적

10)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과 같이 증권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100), 보험회사의 경우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 = (가용자본/요구자본)×100)을 사용하여 건전성지표로 사용

11) 주요 선진국인 G10(미국, 영국,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과 스위스, 룩셈부르크,

통일 기준이다.

지금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도 BIS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본건전성 측정지표이다.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도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본건전성 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세분화된다.

즉 금융감독당국은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 3%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적기시정조치란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취약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부실자산의 처분, 경비절감, 자본금의 증액, 신규업무 진출 제한, 영업의 정지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제도이다.

2011년 상호저축은행 사태를 촉진시킨 것도 바로 이 BIS자기자본비율이었다. 금융감독당국이 대대적으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Table 2에서 보듯이 2007년 6월말부터 2010년 6월말까지 평균 9% 이상을 유지하던 BIS자기자본비율이 2011년 6월말 5.67%로 하락했던 것이다.

이처럼 BIS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주요 요인은 금융위기 및 부동산 침체 장기화에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방향의 전환으로 그동안 융통성 있게 운영되던 자산건전성분류에 대한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데 따른 측면도 있다. 다시 말해서 부실한 상호저축은행은 부실채권을 일시에 상각처리 하거나 보유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게 됨에 따라 BIS자기자본비율로 측정된 자산의 건전성이 극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¹²⁾

스페인을 포함한 13개국의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당국의 대표들로 구성, 각국의 감독당국이 적용할 수 있는 감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역할 수행

12) 2008년부터 이루어지던 부동산 PF 부실자산의 매각 등 처분 작업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호저축은행에서는 연체 발생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부실채권에 대해 연체금을 포함한 신규대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정상채권으로 변한 부실자산에 대해

상호저축은행과 일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은행과 비교하였을 때 급격히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가 경제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2011년 상호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단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 등 제1금융권과 달리 제한된 영업영역과 낮은 인지도, 취약한 지배구조 등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타 금융권과의 경쟁을 통하여 예금을 유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고객의 유치를 위해 제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와 상호저축은행의 안정성을 확인시켜 줘야했다.

즉,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해도 은행보다 이자를 더 받으면서 은행만큼 안전하다는 인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은행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을 수 익성과 자본건전성을 부각시켜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은 수익성과 자본건전성의 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을 일정수준(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최저요구수준인 8%)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사용해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2011년 금융감독당국의 경영건전성 강화 방침¹³⁾ 이후 나온 BIS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에 대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가 되고 있어 어느 정도 예금에 대한 안전성이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호저축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을 최저 요구비율보다 높은 8% 이상으로 유지해온 것은 첫째, 최저 규제비율에 대한 완충장치로 충분한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최저 규제비율이 5%였으므로 실제 상호저축은행은 8~9% 수준의 BIS자기자본비율이 필요했을 것이다.

실제 은행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저 요구비율이 8%이나 전체 평균 10%를 넘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 해주는 사례이다. 둘째,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맞추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여신한도 우대조치 등 우량 상호저축은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거나 상각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 건전성이 악화됨

13) 금융감독당국은 2011년 3월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7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경영실태 점검 등을 진행

행에 대한 혜택도 한 몫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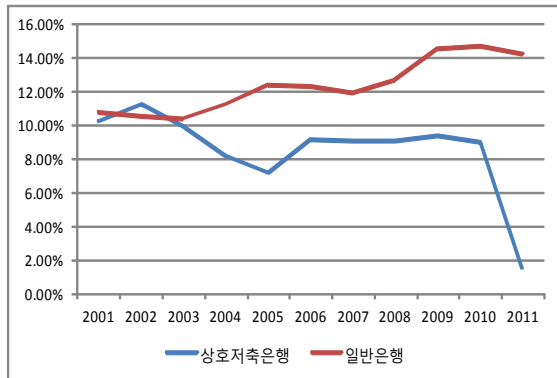


Fig 1. Comparison of BIS Ratios of Mutual Savings Banks to Commercial Banks
Data source: <http://fisis.fss.or.kr> (September, 2011)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내이고, BIS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재무구조가 양호한 상호저축은행을 소위 '상호저축은행 88클럽'이라 하여 우량 상호저축은행으로 통하였으며, 동 요건은 지점 및 출장소 설치 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의 인가요건중 하나이고, 여신한도 우대조치(2006.8월 시행 2011.3월 폐지)의 하나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80억 원 제한 의무를 자기자본의 20% 까지 허용 하고 있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 확장을 위해서는 BIS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 진다.

2.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은 연구목적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으나, Schipper[1]는 이익조정을 "어떠한 사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외부에 재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이익조정은 GAAP를 위반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행태를 가리키는 이익조정 또는 이익조작과는 다르다.¹⁴⁾

이익조정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익조정 관련 연구는 은행의 대손상각에 의한 이익조정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문현주[2]에 의하면 이익조정을 위한 연구방

법으로는 총발생액접근법(aggregate accruals approach), 개별발생액접근법(specific accruals approach) 및 빈도분포접근법(frequency distribution approach)이 있으며 이중 총발생액접근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이익관리는 구조적인 측면과 자금조달, 경영형태 및 재무제표 측면에서 일반기업의 이익관리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일반기업과 같이 총발생액접근법으로 금융기관의 이익조정을 검증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내 금융기관의 이익조정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개별발생액접근법을 사용하였고, 개별항목 중 주로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해외연구에서도 국내연구와 유사하게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켜 자본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손충당금 및 대출채권의 대손처리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음을 밝힌 연구[3,4]가 있는 반면,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율 조정 행위를 뒷받침할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 못한 연구도 있다[5].

국내의 경우 제조업과 은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손상각에 의한 이익조정이 행하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2004년부터 2006년 동안 있었으나 이 역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경미[6]와 박연희[7]의 경우 보고이익관리와 BIS자기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대손상각비를 조정하리라는 가설을 세웠으나 이에 대한 유의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현미와 박홍조[8]는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을 위해 대손충당금을 이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김경미[6]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들이 재량적 활용이 높은 대손상각을 이용하여 보고이익관리와 BIS자기자본비율관리 여부를 χ^2 검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고 2000년~2003년 자료를 사용하여 보고이익과 BIS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상각(환입)전 Δ 보고이익과 Δ 수정대손상각비, 상각(환입)전 보고이익과 수정대손상각비, BIS자기자본비율과 Δ 수정대손상각비를 변수로 사용하여 보고이익과 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해 각각 검증하였다. 박연희[7]는 김경미[6]의 연구와 비슷하지만 추가적으로 대손상각비와 수정된 대손상각비를 가산한 수정보고이익을 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14)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 유용성(권수영, 김문철, 손성규, 최관, 한봉희, 2010) p370

지현미와 박홍조[8]의 경우 2002년~2005년 자료를 사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전기 대손충당금 설정율로 당기 적정 대손충당금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에서 전기의 자기자본비율을 차감한 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을 하였다.

이렇듯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을 연구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추정하는 것으로써 경영자의 재량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이 많은 항목이기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의 성격상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조달하여 운용하는 공공성이 강한 금융기관이므로 일반 기업과 달리 '기업회계기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의 규제[15]도 함께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경영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즉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 추가대출을 일으켜 정상화 하였을 경우 이를 밝혀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대출채권의 분류를 통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이익조정 및 BIS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상호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재량적으로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BIS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 : 상호저축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상호저축은행이 대손상각을 이용하여 이익조정 및 BIS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하였으리라 보여 지는 가운데 특히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중인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다른 상호저축은행보다도 더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으리라 예상되는 바,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 대손충당금 이용에 의한 BIS자기자본비율의

조정은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중인 상호저축은행에서 다른 상호저축은행보다 더 심각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상호저축은행들이 BIS자기자본비율 조정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의 감사품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Big 4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Non-Big 4 감사인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9-19].

이에 외국 회계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 Big 4 감사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의 경우 감사품질이 Non-Big 4 감사인에 비해 높다고 보고, 더 엄격한 감사절차가 이루어져 대손충당금의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Big 4 감사인이 감사한 상호저축은행은 Non-Big 4 감사인이 감사한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대손충당금을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이 상대적으로 더 적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번째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 : Big 4 감사인은 대손충당금 이용에 의한 BIS 자기자본비율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것이다.

본 연구와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은 2011년에 있었던 금융감독당국의 전체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당기순이익 및 BIS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이익조정과 관련하여 추정치에 의한 분석이 이루어졌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2011년 6월말과 2010년 6월말의 실제 회계수치의 비교를 통하여 대손충당금 등이 BIS자기자본비율 관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는데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품질을 보유하고 있는 Big 4 감사인이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을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는데 있다.

3. 표본선정 및 연구모형

3.1 표본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1년 6월말 현재 금융감독

15)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해 매분기마다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 등 특정 자산에 대하여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구의, 고정, 회수의문, 추경손실로 분류하고 각각 0.5%, 2%, 20%, 75%, 10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원의 감독대상이 되는 105개의 상호저축은행이다. 분석 기간은 2009년 회계연도(2010년 6월말)와 2010년 회계연도(2011년 6월말)이며 자료 수집은 상호저축은행이 매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공시하고 있는 금융통계정보(<http://fisis.fss.or.kr/>)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Table 3. Sample Selection Procedure

	#
Mutual Savings Banks as of June 2011	105
Mutual Savings Banks expelled out of the market	1
Final Sample(=1-2)	104

또한 각 상호저축은행간 독립변수의 차이가 큰 것을 감안하여 더미변수를 제외한 각각의 변수의 극단치 처리 방법으로 각 변수의 평균으로부터 ± 3 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관측치를 평균 ± 3 표준편차 값으로 대체하는 윈저라이징(winsorizing) 방식을 택하여 가능한 한 극단치로 인한 검증결과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105개의 상호저축은행 중 영업정지로 인해 2011년 6월말 결산자료가 금융통계정보에 공시되지 않은 1개사(삼화상호저축은행)를 제외한 나머지 104개의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표본 선정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다음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의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중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조정이 주요 요인이었는지 여부와 영업정지중인 상호저축은행과 다른 상호저축은행과의 BIS자기자본비율 조정 차이 및 감사품질과 BIS자기자본비율 조정 간의 관계를 대손충당금의 이용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대손충당금 설정을 변동이 BIS자기자본비율의 변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한다. 그리고 영업정지중인 상호저축은행과 대형회계법인을 각각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BIS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elta BIS = \alpha_0 + \beta_1 \Delta LLP + \beta_2 \Delta LOAN + \beta_3 \Delta NI$$

$$+ \beta_4 \Delta CAP + \beta_5 LNSIZE + \beta_6 OUT + \beta_7 BIG4 + \epsilon$$

여기서, 가설 1의 검증을 위한 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는 BIS자기자본비율 증감분(ΔBIS)이고, 독립변수는 주 실험변수로서 전기대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율의 증감분(ΔLLP)을 사용하였다.

2011년 금융감독원의 전반적인 경영건전성 점검을 통해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부실채권이 드러남으로써 대손충당금이 급격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BIS자기자본비율도 같이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동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BIS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을 하향조정 해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전기대비 대출채권의 증감액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Delta LOAN$)을, BIS자기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전기대비 당기순이익의 증감액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ΔNI)과 전기대비 자본금의 증감액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ΔCAP)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우선 $\Delta LOAN$ 은 대출채권의 전기대비 증감분으로 일반제조업과 달리 금융업에 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¹⁶⁾ 물론 대손충당금의 대부분은 대출채권의 평가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적립되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사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대손충당금 설정을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방향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즉 대출채권 중 부실채권의 규모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결정되므로 오히려 우량채권이 많을수록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변수로 당기순이익의 변동분과 자본금 변동분을 사용한 것은 이 두가지 모두 BIS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이거나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BIS자기자본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0년 회계연도 중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의 증가보다는 당기순이익의 급격한 하락을 기록하였다. 추가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규모의 편차가 크기에 BIS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규모 효과를 통제하기 위

16) 대출채권은 2011년 6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평균 4,757억 원으로 총자산의 평균인 7,320억 원의 65.0%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 2010년 6월말 현재 총자산에 자연로그 취한 값(LNSIZE)을 회귀모형에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 2와 가설 3의 검증을 위해 더미변수인 OUT 변수와 BIG4 변수를 전기대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율의 증감분(ΔLLP)과의 상호결합변수(interaction terms)(각각 $OUT * \Delta LLP$ 와 $BIG4 * \Delta LLP$)를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는 각각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중인 상호저축은행에 해당하는지, 대형회계법인인 Big 4(삼일, 삼정, 한영, 안진)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영업정지중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조정을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컸는지를 검증하고, 대형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다른 외부감사인에 비해 대손충당금의 재량적 조정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4. 실증분석 결과

4.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Table 4는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총자산의 자연로그 값(LNSIZE) 만이 평균은 13.004, 중앙값은 12.866으로 서로 비슷한 값을 보일뿐, 종속변수인 전

기대비 BIS자기자본비율 변동분(ΔBIS)의 평균값은 -0.053 이고 중앙값은 -0.001 으로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작은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작은 값을 보이는 이유는 표본 상호저축은행 중 BIS자기자본비율의 평균 하락률에 비해 하락률이 높은 상호저축은행의 편중현상 때문이다.

특히 극한치를 조정했음에도 최소값이 -0.744 로 평균 및 중앙값에서 크게 벗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표본간 BIS자기자본비율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기대비 대출채권의 증감액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Delta LOAN$)과 전기대비 당기순이익의 증감액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ΔNI)의 평균값은 각각 -0.027 , -0.028 이고, 중앙값은 각각 -0.018 , -0.006 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ΔBIS 와 비슷한 편중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기대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율의 증감(ΔLLP)과 전기대비 자본금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ΔCAP)의 평균값은 각각 0.052 , 0.007 이고, 중앙값은 각각 0.017 , 0.000 으로 평균값이 중앙값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ΔBIS 와 반대로 대손충당금 설정율 증가분이 더 높은 상호저축은행의 편중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금의 경우는 대부분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자본금변동이 없는 반면 일부 상호저축은행에서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6월30일 기준 회계연도에 107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Mean	S. Dev.	Min	Median	Max
ΔBIS	-0.053	0.157	-0.744	-0.001	0.096
ΔLLP	0.052	0.093	-0.045	0.017	0.377
$\Delta LOAN$	-0.027	0.133	-0.354	-0.018	0.350
ΔNI	-0.028	0.075	-0.322	-0.006	0.188
ΔCAP	0.007	0.020	0.000	0.000	0.103
LNSIZE	13.004	1.112	10.263	12.866	15.559
OUT	0.067	0.252	0.000	0.000	1.000
BIG4	0.462	0.501	0.000	0.000	1.000

1) Definition of Variables

- ΔBIS = Change in BIS Capital Adequacy Ratio
- ΔLLP = Change in ratio of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to receivables
- $\Delta LOAN$ = Change in receivables divided by beginning total assets
- ΔNI = Change in net income divided by beginning total assets
- ΔCAP = Change in shareholders' equity divided by beginning total assets
- LNSIZE = Natural logarithm of beginning total assets
- OUT = coded one if a mutual savings bank is out of the market on the end of June in 2011 and zero otherwise
- BIG4 = coded one if the auditor is one of Big4 auditors and zero otherwise

2) ***, **, and * indicate the significance at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개 상호저축은행 중 48개 (46.2%)는 Big 4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졌다.

기술통계량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2010년 6월말 보다 2011년 금융감독원의 경영건전성 점검이 있는 이후인 2011년 6월말 BIS자기자본비율, 대출채권,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설정율 및 자본금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1년 상호저축은행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여파로 각각 변수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에서는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의 아랫부분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윗부분은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우선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면, 종속변수인 ΔBIS는 ΔLLP 및 OUT과는 1%의 유의수준에서 높은 음(-)의 상관관계(각각 -0.938, -0.702)를, ΔNI와는 1%의 유의수준에서 높은 양(+)의 상관관계 (0.859)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낮을수록,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 중인 상호저축은행이 아닐수록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높을수록 BIS자기자본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자 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율과 당기순이익을 조정하고자 할 것이며, 이 경우 당기순이익 보다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조정을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조정 유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ΔLLP의 경우 ΔNI와는 1% 유의수준에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OUT과는 1% 유의수준에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예측한 바와 같이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당기순이익과 영업정지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저축은행의 퇴출(OUT)과 규모

(LNSIZE)는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0.255)를 보이고 있다.

등위상관계수인 스피어만 상관계수의 경우에도 피어슨상관계수의 경우와 같이 BIS자기자본증감율(ΔBIS)은 대손충당금 설정율 증가분(ΔLLP)과 당기순이익 증가분(ΔNI)와 1% 유의수준에서 각각 음(-)과 양(+)의 높은 상관관계(각각 -0.462, 0.659)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변수간 상관관계도 피어슨 상관관계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추가적으로 Table 6는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 중인 상호저축은행(OUT)과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IN)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Big 4 회계법인과 Non-Big 4 회계법인간의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의 비교를 보여준다.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중인 97개 상호저축은행의 ΔBIS, ΔNI 평균이 각각 -0.023, -0.017으로 영업정지 중인 7 상호저축은행의 ΔBIS, ΔNI 평균인 각각 -0.461 및 -0.180에 비해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ΔLLP의 경우는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과 영업정지 중인 상호저축은행의 평균이 각각 0.034과 0.293로 2011년 금융감독원 경영건전성 점검이후 영업정지 중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더 높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특이한 부분은 대출채권의 감소율이 영업정지 중인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의 감소율보다 더 적게 나타나 영업정지 중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채권의 매각 등 처분에 소극적이었거나 미처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동 부실채권이 모두 대손충당금 설정율에 포함되어 더 높은 ΔLLP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Table 5. Correlation Analysis(Pearson / Spearman)

	ΔBIS	ΔLLP	ΔLOAN	ΔNI	ΔCAP	LNSIZE	OUT	BIG4
ΔBIS	1	-0.462****	-0.134	0.659***	0.060	-0.236**	-0.410***	-0.042
ΔLLP	-0.938***	1	-0.235**	-0.685***	0.028	0.381***	0.413***	0.024
ΔLOAN	-0.097	-0.018	1	-0.003	0.148	-0.103	-0.006	-0.026
ΔNI	0.859***	-0.873***	-0.138	1	-0.060	-0.328***	-0.395***	-0.189*
ΔCAP	0.033	0.012	0.273***	-0.021	1	0.089	0.048	0.153
LNSIZE	-0.301***	0.363***	-0.134	-0.339***	0.024	1	0.250**	0.152
OUT	-0.702***	0.697***	0.010	-0.550***	0.033	0.255***	1	-0.018
BIG4	-0.039	0.031	-0.056	-0.077	0.122	0.139	-0.018	1

1) See Table 4 for variable definition.

2) Pearson correlation at the lower diagonal and Spearman correlation at the upper diagonal

3) ***, **, and * indicate the significance at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by Group

	IN	OUT	Diff.	BIG4	NON BIG4	Diff.
	Mean	Mean	t-stat.	Mean	Mean	t-stat.
Δ BIS	-0.023	-0.461	4.85***	-0.059	-0.047	-0.38
Δ LLP	0.034	0.293	-6.32***	0.055	0.049	0.31
Δ LOAN	-0.027	-0.022	-0.10	-0.035	-0.020	-0.56
Δ NI	-0.017	-0.180	-4.20***	-0.034	-0.022	-0.77
Δ CAP	0.007	0.010	-0.33	0.010	0.005	1.21
LNSIZE	12.928	14.053	-2.66***	13.171	12.861	1.42
n	97	7		48	56	

1) See Table 4 for variable definition.

2) ***, **, and * indicate the significance at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유의하지는 않다.

상호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Big 4와 Non-Big 4 회계법인간의 단일량 분석결과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의 조정과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중 대손상각을 이용한 조정이 주요 요인이었는지, 2011년 6월말 영업정지중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이용에 의한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더 많이 이루어졌는지, 감사품질이 대손충당금 이용에 의한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하려고 한다.

Table 7은 대손충당금 이용에 의한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104개 총 표본과 2011년 6월말 영업정지중인 7개의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영업중인 97개 상호저축은행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다.

우선 Table 7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컬럼에 나와 있는 총 표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실증분석 결과 F값이 134.21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어 동 회귀모형이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Δ LLP의 회귀계수(-1.285)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t -값=-9.65)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측한 바와 같이 대손충당금 설정율 이용이 BIS 자기자본비율의 조정의 주요 요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2011년 금융감독원 경영건전성 점검 이전에 많은 상호저축은행들은 대손충당금 파소조정으로 BIS자기자

본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왔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예측한 바와 같이 Δ LOAN과 Δ NI는 BIS자기자본비율과의 관계에서 각각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값(t -값=-3.16)과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t -값=1.84)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출채권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절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위험가중자산과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의 감소를 초래함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대손충당금과 당기순이익은 BIS자기자본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Table 5에서 보았듯이 대손충당금 설정율 증분과 당기순이익 증분간 상관관계는 -0.873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대손충당금 설정율의 감소는 당기순이익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BIS자기자본비율 상향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의 재량적 조정은 BIS자기자본비율의 조정에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대손충당금의 조정을 통하여 BIS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할 유인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고 실증분석 결과는 가설 1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Table 7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컬럼에서는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중인 7개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 영업 중인 97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 동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2011년 6월말 영업정지중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이용에 의한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이 다른 영업 중인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더 많이 이루어졌는지와 관련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Table 7의 회귀모형에 관심변수인 $OUT * \Delta$ LLP를 삽입하였다.

Table 7. Regression Results

$$\Delta\text{BIS} = \alpha_0 + \beta_1\Delta\text{LLP} + \beta_2\Delta\text{LOAN} + \beta_3\Delta\text{NI} + \beta_4\Delta\text{CAP} + \beta_5\text{SIZE} + \beta_6\text{OUT} + \beta_7\text{BIG4} + \varepsilon$$

	Full Sample		Only In Operation	
	Coeff.	t-stat.	Coeff.	t-stat.
intercept	-0.042	-0.68	-0.028	-0.38
ΔLLP	-1.285***	-9.65	-1.010***	-8.26
ΔLOAN	-0.131***	-3.16	-0.099***	-2.92
ΔNI	0.269*	1.84	0.483***	3.61
ΔCAP	0.640**	2.47	0.759***	3.45
LNSIZE	0.005	1.01	0.003	0.77
OUT	-0.069**	-2.49	-	-
BIG4	-0.009	-0.87	-0.003	-0.35
Adj. R ²	0.901		0.831	
F-value	134.21***		79.79***	
n	104		97	

1) See Table 4 for variable definition.

2) ***, **, and * indicate the significance at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그 회귀분석결과는 Table 8에 나타나 있다. Table 8에 의하면 $\text{OUT} \times \Delta\text{LLP}$ 의 회귀계수(-0.695)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t -값=-3.54)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업정지중인 상호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이용에 의한 BIS자기자본비율의 조정을 다른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더 행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이는 과거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 규모가 클수록 금융감독원 경영건전성 점검 이후 대손충당금 설정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BIS자기자본비율도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러한 급격한 BIS자기자본비율 감소를 경험한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위의 회귀분석결과들은 가설 2를 지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품질이 대손충당금 이용에 의한 BIS 자기자본비율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Table 7의 회귀분석모형에 관심변수인 $\text{BIG4} \times \Delta\text{LLP}$ 를 삽입하였다. 그 회귀분석결과는 Table 9에 나타나 있다. Table 9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컬럼에 의하면, ΔLLP 의 회계계수(-1.131)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t -값=-7.98)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Non-Big 4 회계법인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

Table 8. Regression Results

$$\Delta\text{BIS} = \alpha_0 + \beta_1\text{OUT} + \beta_2\Delta\text{LLP} + \beta_3\text{OUT} \times \Delta\text{LLP} + \beta_4\Delta\text{LOAN} + \beta_5\Delta\text{NI} + \beta_6\Delta\text{CAP} + \beta_7\text{LNSIZE} + \varepsilon$$

	Full Sample	
	Coeff.	t-stat.
Intercept	-0.049	-0.04
OUT	0.107	0.57
ΔLLP	-1.166***	-8.95
$\text{OUT} \times \Delta\text{LLP}$	-0.695***	-3.54
ΔLOAN	-0.118***	-3.00
ΔNI	0.289**	2.10
ΔCAP	0.693***	2.82
LNSIZE	0.005	1.14
BIG4	-0.016	-1.21
Adj. R ²	0.911	
F-value	133.13***	
n	104	

1) See Table 4 for variable definition.

2) ***, **, and * indicate the significance at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Table 9. Regression Results

$$\Delta\text{BIS} = \alpha_0 + \beta_1\text{BIG4} + \beta_2\Delta\text{LLP} + \beta_3\text{BIG4}*\Delta\text{LLP} + \beta_4\Delta\text{LOAN} + \beta_5\Delta\text{NI} + \beta_6\Delta\text{CAP} + \beta_7\text{LNSIZE} + \beta_8\text{OUT} + \varepsilon$$

	Full Sample		Only In Operation	
	Coeff.	t-stat.	Coeff.	t-stat.
Intercept	-0.003	-0.04	0.001	0.01
BIG4	0.006***	0.57	0.007**	0.74
ΔLLP	-1.131***	-7.98	-0.821***	-5.29
BIG4*ΔLLP	-0.298***	-2.64	-0.295*	-1.93
ΔLOAN	-0.133***	-3.30	-0.096***	-2.81
ΔNI	0.192	1.33	0.444***	3.33
ΔCAP	0.701***	2.77	0.741***	3.41
LNSIZE	0.001	0.24	0.000	0.10
OUT	-0.087***	-3.16	-	-
Adj. R ²	0.906		0.836	
F-value	125.58***		71.01***	
n	104		97	

1) See Table 4 for variable definition.

2) ***, **, and * indicate the significance at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당금을 이용한 BIS자기자본조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외국 대형회계법인과 제휴하고 있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 Big 4(삼일, 삼정, 한영, 안진)가 감사한 상호저축은행과 그렇지 않은 상호저축은행과 감사품질 비교에서도 BIG4*ΔLLP의 회귀계수(-0.298)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t-값=-2.64)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우수한 감사품질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 Big 4(삼일, 삼정, 한영, 안진)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이 내부에서 BIS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⁷⁾

Table 9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컬럼은 2011년 6월 말일 현재 영업 중인 97개 상호저축은행만을 대상으로 동일 분석을 반복하였다. 여전히 관심변수인 BIG4*ΔLLP의 회귀계수(-0.295)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값을 보여 주고 있다.

17)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에게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부분은 BIS자기자본비율로 인해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나 상호저축은행 내부에서 대출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자 역시 대출이 연장되는 상황에서 상호저축은행과 공모할 수밖에 없어 이를 외부감사인이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의 방법으로는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 연체금액까지 포함한 신규대출을 발생시켜 부실채권을 정상화 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09년 회계연도(2010년 6월말)까지는 대손충당금을 통해 당기순이익 조정하여 BIS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해왔으나 2011년 금융감독원 경영건전성 점검을 통해 과거 과소계상된 대손충당금의 정상전입이 이루어지면서 BIS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또한,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중인 7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 이용을 통한 BIS자기자본조정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더 심각했었다는 실증적 증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설1과 가설2는 상기 결과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Non-Big 4 감사인 뿐만 아니라 외국 대형회계법인과 제휴하고 있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 Big 4(삼일, 삼정, 한영, 안진)도 외부감사 시 상호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BIS자기자본조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므로 가설 3은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 상기 실증 분석결과는 대형 회계법인이 실질적으로 상호저축은행 감사에 소홀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나 이를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로 일반화하기에는 검증기간 및 표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통계학적으로 실증모형 설정 시 BIS자기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려되지 않은 변수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Table 10. Regression Results

$$\Delta\text{BIS} = \alpha_0 + \beta_1\text{OUT2} + \beta_2\Delta\text{LLP} + \beta_3\text{OUT2}*\Delta\text{LLP} + \beta_4\Delta\text{LOAN} + \beta_5\Delta\text{NI} + \beta_6\Delta\text{CAP} + \beta_7\text{LNSIZE} + \varepsilon$$

	Full Sample	
	Coeff.	t-stat.
Intercept	-0.082	-1.41
OUT2	0.004	0.16
ΔLLP	-1.068***	-8.00
$\text{OUT2}*\Delta\text{LLP}$	-0.530***	-3.86
ΔLOAN	-0.106***	-2.71
ΔNI	0.183	1.36
ΔCAP	0.573**	2.38
LNSIZE	0.008*	1.73
BIG4	-0.012	-1.27
Adj. R ²	0.915	
F-value	139.60***	
n	104	

1) OUT2 is coded 1 for the mutual savings banks that are out of the market on September, 2011 and 0 otherwise.

2) See Table 4 for variable definition.

3) ***, **, and * indicate the significance at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4.3 추가 분석

본 추가분석에서는 분석대상기간인 2011년 6월말 결산이후인 그해 8월 및 9월 금융감독당국은 추가로 8개 상호저축은행(경은, 토마토, 프라이م, 제일, 제일2, 에이스, 대영, 파랑새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이들 추가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을 OUT 변수에 포함시켰을 경우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Table 10 추가분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 중인 상호저축은행과 추가적으로 그해 8월과 9월에 영업정지된 상호저축은행을 OUT변수에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즉 2011년 8월 및 9월에 영업정지된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추가 영업정지된 상호저축은행 역시 2011년 6월말 결산시기에는 이미 부실화가 진행된 상태로, 이미 영업정지 중인 상호저축은행과 같이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에 의한 BIS자기자본비율의 조정 규모가 다른 정상영업 중인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2011년을 기준으로 그 동안 우량하던 상호저축은행이 갑자기 부실한 상호저축은행으로 변하여 우리 경제에 혼란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2011년 전·후의 실제 회계수치를 비교하여 상호저축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여 왔던 주요 수단이 대손충당금이었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중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 중인 상호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이 영업 중인 상호저축은행과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이용에 의한 BIS자기자본비율 조정과 외부감사인의 역할에 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지만 일반 은행, 증권회사 등 제1금융권에 비해 건전성에서 다소 취약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03년 카드사태 등 가계신용위기 이후 몰락하는 서민금융을 살리고 사금융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상호저축은행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육성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영업을 확장하였고, 동시에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을 은행의 최저요구비율인 8%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호저축은행은 2004년 부

동산 호황과 더불어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여신을 일으켜 수익을 확보하여 왔으나, 지속된 경기침체,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부동산 PF 등과 관련된 대출채권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다.

결국 2008년부터 부동산 PF의 부실채권의 처분, 예보로의 매각 등의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상호저축은행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감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2011년 대대적으로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성 점검에 나서게 되면서 2010년 6월말 9.05%이던 BIS자기자본비율은 2011년 6월말 5.76%로 급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참고로 BIS자기자본비율의 급락요인에 관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내 상호저축은행이 인위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 중 대손충당금이 핵심 수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2011년 6월말과 직전 회계연도인 2010년 6월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의 상호저축은행 검사 후 후속조치를 통한 대손충당금 설정율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급격한 하락이 BIS자기자본비율의 급격한 하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저축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여 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 BIS자기자본비율의 일정수준 유지를 위한 대손충당금 이용은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 중인 97개 상호저축은행 보다 동 기준일에 영업정지중인 7개 상호저축은행에 의해 더 많이 이루어졌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2011년 8월과 9월 추가적으로 영업정지가 발표된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 추가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부실 상호저축은행 일수록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이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이용을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조정과 외부감사인의 역할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Non-Big 4 감사인 뿐만 아니라 Big 4 감사인도 상호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BIS자기자본을 조정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의 주요 조정 수단이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 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높은 감사품질을 보유하고 있는 Big 4 감사인 조차도 인위적인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을 효율적으로 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책입안자, 감독당국,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외부감사인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과거 2011년 금융감독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 점검이라는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2개년도만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증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둘째, 대손충당금, 대출채권, 당기순이익, 그리고 자본금 이외에 BIS자기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외적요인을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K. Schipper. (1989). Commentary on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Horizons*, 3, 91-102.
- [2] H. J. Moon. (2005).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Loan Loss Provisions for Banks and Their Value Relevance. *Korean Accounting Journal*, 14(1), 1-26
- [3] A. Beatty, S. L. Chamberlain, & J. Magliolo. (1995). Managing financial reports of commercial bank: the influence of taxes, regulatory capital, and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3, 231-261.
- [4] S. E. Moyer. (1990). Capital adequacy ratio regulations and accounting choices in commercial bank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3, 123-154
- [5] J. Collins, D. Shackelford, & J. Wahlen. (1995). Bank Differences in the coordination of regulatory capital, earnings, and tax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3, 263-291
- [6] K. M. Kim. (2004). *Earnings management by mutual saving banks using bad debt expenses and/or loan loss provision*.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7] Y. H. Park. (2005). Earnings Management by Mutual Saving Banks Using Bad Debt Expenses and/or Loan Loss Provisions. *Tax and Accounting Journal*, 6(2), 67-85
- [8] H. M. Ji & H. J. Park. (2006). The Regulatory Capital Ratio Management of Saving Banks Using the Loan Loss Provisions. *Korean Accounting Journal*, 15, 23-44
- [9] S. J. Park, K. B. Hue, & H. Y. Ma. (2011). The Impacts of the K-IFRS Introduction on Allowance for Bad Debts: A case study on mutual savings banks. *Korean Accounting Journal*, 20(2), 123-152.
- [10] C. Becker, M. DeFond, J. Jiambalvo, & K. R.

- Subramanyam. (198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 1-24,
- [11] J. H. Choi, C. Kim, J. B. Kim & Y. Zhang. (2010). Audit office size, audit quality, and audit pricing.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9, 73-98.
- [12] E. Feroz, K. Park, & V. Pastena. (1991). The financial and market effects of the SEC's accounting and auditing enforcement releas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 107-142.
- [13] J. Francis, E. Maydew, & H. Sparks. (1999). The role of Big 6 auditors in the credible reporting of accrual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8, 17-34.
- [14] J. R. Francis & J. Krishnan. (1999). Accounting accruals and auditor reporting conservatism.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6, 135-165.
- [15] Z. Palmrose. (1988). An analysis of auditor litigation and audit service quality. *Accounting Review*, 63, 55-73.
- [16] K. St. Pierre & J. Andersson. (1984). An analysis of the factors associated with lawsuits against public accountants. *Accounting Review*, 59, 242-263.
- [17] K. R. Petroni & M. Beasley. (1996). Error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their relation to audit firm typ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4, 151-171.
- [18] Y. R. Ryu, S. H. Ji & G. R. Lee. (2017). A Study on the Relevance between Auditing Quality and Book-Tax Difference Variabil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 187-193.
- [19] J. H. Jeon. (2018).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Audit Size on Credit Rat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 1-8.

김 대 범(Daebom Kim)

[정회원]



- 2013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회계 전공)
- 현재 금융감독원 팀장
- 관심분야 : 기업공시, 감사품질
- E-Mail : kdbgo@fss.or.kr

이 중 은(Jong Eun Lee)

[정회원]



- 1991년 2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2000년 5월 : SUNY at Albany (회계 학석사)
- 2008년 8월 : Temple University (경영학박사, 회계전공)
- 2012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회계전공) 부교수
- 관심분야 : 감사품질, 지배구조
- E-Mail : jelee2012@skku.edu